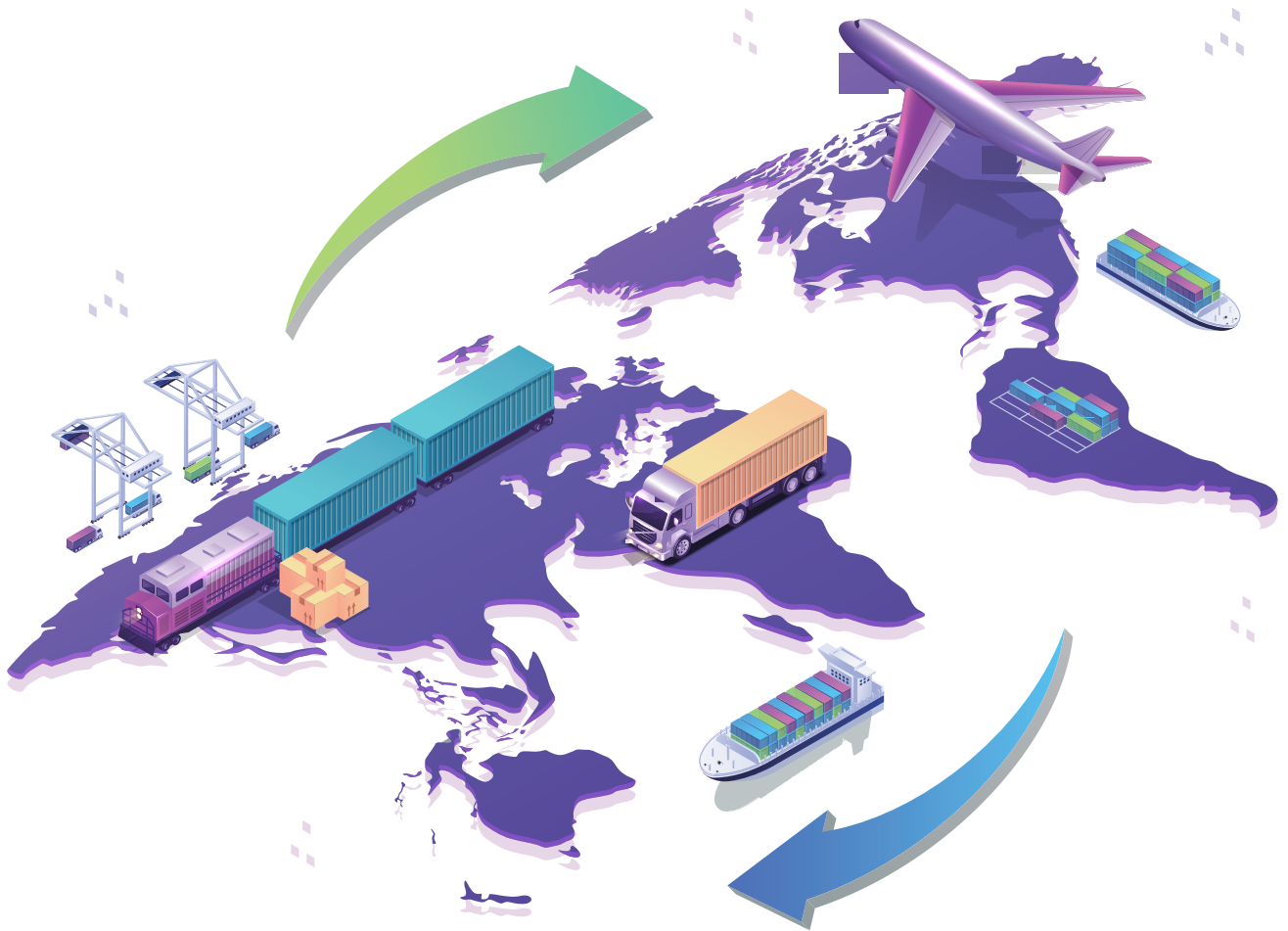


FTA BRIEF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의 적용 구조
: 한국산 물품의 세율 산정과 한-미 FTA 활용 실익을 중심으로

Vol. 05
July 2026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본격적인 Mega-FTA 시대를 맞이하여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과 활용 및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국가의 관세행정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있는 전문 기관입니다.
- 한국원산지정보원은 「FTA BRIEF」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과 원산지 관련 수집 정보와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기업들이 FTA 원산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원산지정보원 사업

활용연구

FTA 활용률 통계 산출
FTA 관세율 정보 제공
수출입 기업 FTA 활용 지원

정책연구

FTA 협상 지원
FTA 정책 지원정보
원산지 규정 분석 및 해석

신통상규제 연구

수출입 규제 수집 분석
원산지판정 사례 분석
국제통상 정책 동향 수집 분석

FTA·원산지 연구

관세청 FTA
이행 지원

수출입기업
지원

원산지검증 지원

국내·외 품목·산업 동향 수집 분석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예비조사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운영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관리시스템 제공

FTA 전문인력 양성

FTA 활용 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전문자격제도 운영 및 도서발간



CONTENTS

I.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06
신청인	07
신청 수수료	08
효력 발생 시기	08
유효기간	08
II. BTI 신청 세부 내용	
BTI 신청 세관	10
신청 방법	11
신청 후 처리절차	12
기타	13
III.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기본사항	16
신청서 작성 방법	17
IV. 부록	
BTI 관련 용어 및 약어	28
결정서 양식 및 설명	30
BTI 신청 처리 프로세스 및 단계별 처리 코드	32
BTI 결정 공개 사례 조회 방법	33
BTI 결정 공개 사례	34

* 사진 : 한국원산지정보원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신청 가이드북’ 발간(2026.6.29.)

- ☑ 관세청과 한국원산지정보원은 EU로 수출하는 품목이 CBAM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EU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가이드북」을 발간하였다.
 - 수출물품의 CBAM 대상 여부는 EU 수입통관 시 적용되는 품목번호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를 고려한 EU 품목분류 사전심사(BTI) 제도의 개요와 활용 방법 등을 함께 수록하였다.
 - 이를 통해 수출기업은 사전에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CBAM 대상 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하여 통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해당 가이드북은 아래 홈페이지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원산지정보원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해당 가이드북은 (1) 한국원산지정보원 ▶ 발간자료 ▶ 신통상 정보 ▶ 동향 정보 또는 (2) FTA 포털 ▶ 통상변화대응지원 ▶ EU CBAM 관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의 적용 구조

: 한국산 물품의 세율 산정과 한-미 FTA 활용 실익을 중심으로

[글_오윤진 한국원산지정보원 활용연구팀장]



1. 들어가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2026년 7월 24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시행하였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정책 수단으로, 그동안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와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한 제재 조치에 주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교역 상대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지 않거나 이를 실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행위·정책·관행을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판단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제재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액의 약 99.4%를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이며, 한국도 이에 포함된다.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나 관세법 307조(강제노동 생산물품 수입금지)와 달리, 직전에 시행되었던 무역법 122조와 유사하게 특정 품목이 아닌 국가 단위로 적용되는 포괄적 통상조치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따라 면제 대상 품목을 제외한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 물품 전반에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세율 산정 방식은 기존 무역법 122조와 차이를 보인다. 122조가 모든 대상국에 10%의 추가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것과 달리, 301조는 경제권별 차등세율과 상한제(net of MFN)를 병행¹⁾하여 적용한다. 그 결과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12.5% 상한(net of MFN) 방식이 적용되는 세 개 경제권 중 하나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차등적인 세율 구조는 품목별 기본세율(MFN)에 따라 한국산 물품의 대미 수출 경쟁력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본 고에서는 301조 관세조치의 법적 체계와 한국산 물품에 대한 세율 산정 구조를 살펴보고, 미국의 對한 수입 상위 품목을 중심으로 경쟁국과의 관세 구조를 비교하여 한-미 FTA 활용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1) ① 10% 정액가산 ② 10% 상한(net of MFN), ③ 12.5% 정액가산, ④ 12.5% 상한(net of MFN), ②와 ④의 상한 방식은 기본 적용세율(MFN)과 10%(또는 12.5%)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 무역법 301조 조치의 개요



(1) 법적 근거와 조치 절차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미국의 통상 이익을 침해할 때 무역대표부가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상대국의 관행이 미국의 무역협정상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역대표부가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며,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국의 통상 이익을 고려하여 조치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강제노동관세 부과 조치는 후자에 해당한다.

301조 조사는 조사 개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 상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조치를 관보에 고시하는 절차로 진행되며, 각 단계의 주요 내용은 모두 연방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공개된다. 또한 최종 조치에는 별도의 종료 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무역대표부가 조치를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다.

>> [표 1] 무역법 301조의 주요 규정 및 절차

항목		내용
법적 근거		1974년 무역법 301조(19 U.S.C. §2411)
조사 개시		이해관계자 청원 또는 무역대표부 직권(제302조(b)(1))
조사 절차		• (의견 수렴)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며, 필요시 공청회 개최 • (정부 간 협의) 조사 개시 시 상대국 정부에 협의 요청 • (조사 종료)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후 12개월 이내에 조치 여부 판단
조치 시행	의무적	미국의 협정상 권리 침해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관행인 경우
	재량적	'불합리(unreasonable)'하거나 차별적인 관행으로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 수단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무역협정상 혜택 철회, 서비스 부문 영업 제한 등(301조(c)(1)(B))
조치 범위		조사 대상 관행과 관련 없는 물품·부문에도 적용 가능(301조(c)(3)(A)·(B))
사후 변경		필요성 재검토를 포함한 조치 변경 근거는 제307조(19 U.S.C. §2417)

(2) 조사 경과

이번 조치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무역법 122조의 글로벌 10% 관세가 2026년 7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이를 사실상 대체하는 관세조치로 시행되었다.

무역대표부는 2026년 3월 12일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6월 2일 종합보고서를 통해 조사 대상 모두를 조치 대상(actionable)으로 판정하였다. 이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은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캐나다·에콰도르·EU·인도네시아·멕시코·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은 제도는 갖추고 있으나 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2026년 6월 5일 관보(91 FR 34272)를 통해 세율안이 공개되었다. 초안은 제도 운영 수준에 따라 14개 경제권에는 10%,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에는 1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원료 사용 실적에 비례하여 섬유·의류 제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섬유 메커니즘(Textile Mechanism)도 제안되었다.

이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캄보디아,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는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를 신설하였고, 요르단은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 이하 ART)을 통해 이행을 약속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인도, 스리랑카, 온두라스, 요르단, 트리니다드토바고 등 5개국이 12.5% 적용 대상에서 10% 적용 대상으로 재분류되었다. 최종적으로 10% 적용 대상은 19개 경제권, 12.5% 적용 대상은 41개 경제권으로 확정되었다.

» [표 2]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조사 경과

시기	내용
2026. 3. 12.	제302조(b)(1)에 따라 60개 경제권에 대한 조사 개시(3. 17. 관보 게재, 91 FR 12884)
2026. 6. 2.	60건 모두 조치 대상(actionable) 판정, 종합보고서 공표
2026. 6. 5.	조치안 관보 게재(91 FR 34272). 10%·12.5% 차등안과 면제 품목안 제시, 의견수렴 개시
2026. 7. 7.~ 7. 9.	• 무역대표부 및 제301조 위원회 주관 3일간 공청회 개최 • 100명 이상 증언(상대국 정부 대표, 업계 단체, 미국 내 생산자, NGO 등), 서면 의견 1,600건 이상 접수
2026. 7. 23.	대통령 각서 발령 및 무역대표부 최종 조치 관보 게재
2026. 7. 24. 0:01	시행(무역법 제122조 글로벌 10% 관세 만료)

(3) 경제권별 최종 조치

최종 조치는 대상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 운영 수준에 따라 세율과 부과 방식을 조합하는 형태로 확정되었다. 세율은 10%와 12.5%의 두 단계로 구분되며, 부과 방식은 정액 가산 방식과 상한(net of MFN) 방식으로 나뉜다.

먼저 세율은 대상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 운영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제도 도입을 약속한 경제권, 또는 일부 강제노동 생산물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19개 경제권에는 10%가 적용된다. 반면 이러한 제도를 갖추지 않은 41개 경제권에는 12.5%가 적용된다.

부과 방식은 정액 가산 방식과 상한(net of MFN)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액 가산 방식은 해당 물품의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에 10% 또는 12.5%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반면 상한 방식은 MFN 관세율과 10%(또는 12.5%) 가운데 높은 세율이 최종 관세율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에 따라 MFN 관세율이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한 세율과의 차액만큼만 추가 부과되고, MFN 관세율이 상한 이상인 경우에는 301조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한 방식은 전체 대상 경제권 가운데 5개 경제권에만 적용된다. 10% 단계에서는 EU와 대만이, 12.5% 단계에서는 한국·일본·스위스가 해당된다. 무역대표부는 연방관보를 통해 이들 경제권에 상한 방식을 적용한 이유로, 해당 경제권과의 무역협정(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향후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의 도입 및 실효적 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세율 단계와 부과 방식을 조합하면 301조 강제노동관세는 총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 [표 3] 경제권별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 적용 방식 및 세율

세율 단계	적용 방식	산식	경제권
10%	정액 가산	MFN + 10%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캐나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요르단, 말레이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스리랑카,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 등 총 17개 경제권
	상한	MFN과 10% 중 높은 세율 적용 • MFN<10% : MFN+추가관세=10% • MFN≥10% : MFN 유지	EU, 대만
12.5%	정액 가산	MFN + 12.5%	중국, 베트남, 브라질, 호주 등 총 38개 경제권
	상한	MFN과 12.5% 중 높은 세율 적용 • MFN<12.5% : MFN+추가관세=12.5% • MFN≥12.5% : MFN 유지	한국, 일본, 스위스

한편, 섬유 메커니즘(Textile Mechanism)은 방글라데시·캄보디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4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하는 섬유·의류 관세할당(TRQ) 제도로 확정되었다. 미국산 면화 및 섬유 원료 사용 실적에 비례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를 면제하며, 존속기간은 3년이다. 다만 세부 적용 요건과 시행 시기 등은 후속 연방관보를 통해 별도로 공표될 예정이다.

3. 한국산 물품의 301조 관세율 산정



(1) 관세 산정 방식과 신설 HTSUS 세번

한국산 물품에 대한 301조 관세 적용 방식은 연방관보 제III부 B절 49항에 규정되어 있다. 부속서 I 및 부속서 II 파트 A에 열거된 면제 대상을 제외한 모든 한국산 물품에는 앞서 살펴본 12.5% 상한(net of MFN) 방식이 적용된다.

연방관보는 한국산 물품에 대해 먼저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Column 1 세율(MFN 또는 한·미 FTA 협정세율)²⁾을 확인한 후, 이를 기준으로 301조 관세의 적용 여부와 부과 수준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olumn 1 세율이 12.5% 미만인 경우에는 Column 1 세율과

2) Column 1(제1열)은 일반세율(MFN)과 FTA 등 협정세율(Special)을 포함하는 적용세율이고, Column 2(제2열)는 정상무역관계(NTR)가 적용되지 않는 국가(북한, 쿠바 등)에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301조 관세의 합(sum)이 12.5%가 되도록 추가관세를 부과하며, 12.5%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Column 1 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러한 상한 방식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무역대표부는 부속서 I를 통해 HTSUS 제99류에 9903.05.70과 9903.05.71 두 개의 세번을 신설하였다.

>> [표 4] HTSUS 제99류 신설 세번

HTS	대상	부과 관세율
9903.05.70	Column 1 세율(MFN 또는 협정세율)이 12.5% 이상	Column 1 세율 적용 (제301조 추가관세 없음)
9903.05.71	Column 1 세율(MFN 또는 협정세율)이 12.5% 미만	Column 1 세율 + 301조 관세 = 총 12.5%

HTSUS 9903.05.71은 Column 1 세율이 12.5% 미만인 물품에 적용되는 신고 세번으로, Column 1 세율과 301조 관세를 합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운용된다. 반면 9903.05.70은 Column 1 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물품에 적용되는 신고 세번으로, 추가관세 없이 기존 Column 1 세율을 적용한다.

(2) 경제권별 관세 구조 비교

301조 강제노동관세는 대상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물 수입금지 제도 운영 수준에 따라 정액 가산 방식과 상한(net of MFN) 방식으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한국은 일본·스위스와 함께 12.5% 상한(net of MFN) 방식이 적용되는 3개 경제권 중 하나이다.

정액 가산 방식은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Column 1 세율에 일정 세율을 그대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10% 정액 가산은 아르헨티나·방글라데시·캐나다·인도·멕시코·영국 등 17개 경제권에, 12.5% 정액 가산은 중국·베트남·브라질·호주 등 38개 경제권에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Column 1 세율이 높을수록 총관세율도 동일한 폭으로 증가한다.

반면 상한(net of MFN) 방식은 최종 관세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되는 방식으로, 한국·일본·스위스에는 12.5%, EU·대만에는 10%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Column 1 세율이라도 정액 가산 방식과는 최종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 [표 5] 301조 강제노동관세 적용 방식별 세율 비교(예시)

Column 1 세율	301조 관세 10%		301조 관세 12.5%	
	① 정액 가산 MFN+10.0%	② 상한 MFN과 10% 중 높은 세율 적용	③ 정액 가산 MFN+12.5%	④ 상한 MFN과 12.5% 중 높은 세율 적용
0.0%	10.0%	10.0%	12.5%	12.5%
1.0%	11.0%	10.0%	13.5%	12.5%
2.5%	12.5%	10.0%	15.0%	12.5%
5.3%	15.3%	10.0%	17.8%	12.5%
6.4%	16.4%	10.0%	18.9%	12.5%
12.5%	22.5%	12.5%	25.0%	12.5%
16.0%	26.0%	16.0%	28.5%	16.0%

※ 적용세율은 Column 1에 규정된 일반세율(MFN) 또는 협정세율(Special)을 의미하며, 위 수치는 연방관보에서 규정한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로서 특정 품목의 실제 적용세율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정액 가산 방식과 상한 방식은 Column 1 세율 수준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가진다. 정액 가산 방식은 Column 1 세율에 관계없이 일정 세율을 추가하므로 관세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상한 방식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추가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최종 관세율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된다. 따라서 한국산 물품에 적용되는 301조 강제노동관세의 효과는 Column 1 세율이 12.5%를 기준으로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는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3) 한국산 물품의 관세 부담 - 기본세율 구간별 분석

이하에서는 MFN을 기준으로 12.5% 미만인 구간과 12.5% 이상인 구간으로 나누어 한국산 물품의 관세 부담을 분석한다. 여기에서 MFN은 미국 HTSUS Column 1의 일반세율(General)을 의미한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은 301조 강제노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① MFN 12.5% 미만 구간 : 상한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구간

MFN이 12.5% 미만인 품목에서는 경제권별 적용 방식에 따라 최종 관세율이 달라진다. 한국은 총관세율이 12.5%로 결정되는 반면, 다른 경제권은 정액 가산 방식 또는 10% 상한 방식이 적용되어 관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 파스타류(HTS 1902.30.0060, MFN 6.4%)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표 6] 파스타류(HTS 1902.30.0060, MFN 6.4%) 예시

적용 방식		경제권(예시)	산식	최종세율
10%	정액가산	인도·캐나다·영국	6.4%+10%	16.4%
	상한	EU·대만	max(6.4%, 10%)	10.0%
12.5%	정액가산	중국·베트남	6.4%+12.5%	18.9%
	상한	한국	max(6.4%, 12.5%)	12.5%

위 예시에서 한국의 총관세율은 12.5%로, 12.5% 정액 가산이 적용되는 중국·베트남(18.9%)보다 낮지만, 10% 상한이 적용되는 EU·대만(10.0%)보다 2.5%p 높다. 즉, 저세율 품목에서는 한국이 12.5% 정액 가산 방식이 적용되는 경제권보다는 유리하지만, 10% 상한 방식이 적용되는 EU·대만보다는 불리하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한·미 FTA 활용에 따른 관세 절감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협정세율이 0%인 품목이라도 상한 방식에 따라 최종세율이 12.5%로 결정되므로, 협정세율 인하 효과가 301조 추가관세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은 [표 7]에서도 확인된다. 컴퓨터용 부분품(HTS 8473.30.1140), 자동차용 시트 부분품(HTS 9401.99.1085)처럼 MFN이 Free(0%)인 품목은 종전에는 무관세로 수입되었으나, 이번 조치 이후에는 모두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즉, MFN이 낮은 품목일수록 관세 부담의 증가폭이 커지며, 이 구간에서는 한·미 FTA를 활용하더라도 추가적인 관세 절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표 7] 2025년 미국의 對한 수입 상위 품목의 적용방식별 부과 관세율 비교

산업군	HTS	품명	MFN	301조 관세 10%		301조 관세 12.5%	
				① 정액가산 (MFN 포함)	② 상한	③ 정액가산 (MFN 포함)	④ 상한
농림수산물	1902300060	파스타류	6.4%	16.4%	10.0%	18.9%	12.5%
광산물	2710191600	등유형 제트연료	52.5¢/bbl (주1 참조)	52.5¢/bbl + 10%	10.0%	52.5¢/bbl + 12.5%	12.5%
화학공업 제품	3002140010	면역물품	Free	10.0%	10.0%	12.5%	12.5%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제품	3918101040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	5.3%	15.3%	10.0%	17.8%	12.5%
섬유류	5503200015	합성스테이플 섬유	4.3%	14.3%	10.0%	16.8%	12.5%
생활용품	9401991085	자동차용 시트 부분품	Free	10.0%	10.0%	12.5%	12.5%
전자전기 제품	8473301140	컴퓨터용 부분품	Free	10.0%	10.0%	12.5%	12.5%
잡제품	7115900560	귀금속제 기타제품	Free	10.0%	10.0%	12.5%	12.5%

※ 산업군은 MTI 1단위(0~9)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산업군은 2025년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액 기준 상위 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주 1) 등유형 제트연료는 종량세(센트/bbl) 적용 품목으로, 미국 주석 제52항 (k)에 따라 종가환산율(AVE)을 산정한 후 12.5% 상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주 2) 철강금속제품(HTS 7403110000)과 기계류(HTS 8703230140)는 무역확장법 232조가 우선 적용되므로 본 표에서 제외하였다.

② MFN 12.5% 이상 구간 : 한·미 FTA 활용 실익이 발생하는 구간

MFN이 12.5% 이상인 품목에서는 12.5% 상한(net of MFN) 방식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국은 한·미 FTA를 활용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301조 관세가 적용되더라도 총관세율을 12.5%로 제한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대만은 MFN을 그대로 부담하고, 중국·베트남 등 12.5% 정액 가산 적용 경제권은 MFN에 12.5%가 추가되어 총관세율이 더욱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래[표 8]과 같이, 니트 셔츠류(HTS 6105.20.2010, MFN 32.0%)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경우 총관세율이 12.5%로 제한된다. 이는 중국·베트남(44.5%)보다 32.0%p, EU·대만(32.0%)보다 19.5%p 낮은 수준이며,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도 19.5%p의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즉, MFN이 12.5% 이상인 품목에서는 한·미 FTA 활용 여부가 관세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 [표 8] 니트 셔츠류(HTS 6105.20.2010, MFN 32.0%) 예시

적용 방식		경제권(예시)	산식	최종세율
10%	정액가산	인도·캐나다·영국	32%+10%	42.0%
	상한	EU·대만	max(32%, 10%)	32.0%
12.5%	정액가산	중국·베트남	32%+12.5%	44.5%
	상한	한국	FTA 미적용시 : max(32.0%, 12.5%)	32.0%
			FTA 적용시 : max(0%, 12.5%)	12.5%

이러한 특징은 [표 9]에서도 확인된다. 2025년 미국의 대한 수입액 상위 고세율 품목은 대부분 섬유류와 농림수산물에 집중되어 있으며,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MFN(14.0~32.0%)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총관세율을 12.5%로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품목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충족 여부가 직접적인 관세 절감 효과로 이어진다.

≫ [표 9] 2025년 미국의 對한 수입액 상위 5대 품목

- MFN 12.5% 이상 품목의 경제권 적용방식별 부과 관세율 비교

순위	산업군 / HTS	MFN	301조 관세 10%		301조 관세 12.5%			2025 미국 주요 수입국 (상위 3개국)
			① 정액가산 (MFN 포함)	② 상한	③ 정액가산 (MFN 포함)	④ 상한		
						협정세율 X	협정세율 O	
1	농림수산물 /1904900140	14.0%	24.0%	14.0%	26.5%	14.0%	12.5%	캐나다
								한국
								스페인
2	섬유류 /6105202010	32.0%	42.0%	32.0%	44.5%	32.0%	12.5%	베트남
								요르단
								중국
3	농림수산물 /2008979094	14.9%	24.9%	14.9%	27.4%	14.9%	12.5%	한국
								캐나다
								태국
4	섬유류 /6110303053	32.0%	42.0%	32.0%	44.5%	32.0%	12.5%	베트남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5	섬유류 /6115969020	14.6%	24.6%	14.6%	27.1%	14.6%	12.5%	중국
								베트남
								엘살바도르

* 2025년 미국의 對한 수입실적 기준, 기본세율(MFN)이 12.5% 이상인 품목 중 수입액 상위 5대 품목. 주요 수입국은 2025년 해당 HTS 품목의 미국 수입액 기준 상위 3개국임

다만 이러한 관세상 우위가 모든 경쟁국에 대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연방관보는 CAFTA-DR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되는 엘살바도르·과테말라산 섬유·의류와 요르단산 물품에 대해서는 301조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해당 품목의 총관세율은 0%가 된다.

실제로 [표 9]의 2위·4위·5위 품목에서도 요르단과 엘살바도르·과테말라가 주요 수입국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베트남 및 EU·대만과의 경쟁에서는 관세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CAFTA-DR 특혜를 적용받는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는 이러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다.

③ 종합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한국의 관세 경쟁력은 MFN 12.5%를 기준으로 상반된 양상을 보인다. MFN이 12.5% 미만인 품목에서는 한·미 FTA를 활용하더라도 총관세율이 12.5%로 유지되어 관세 절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MFN이 12.5% 이상인 품목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총관세율을 12.5%로 제한할 수 있어 한·미 FTA 활용의 실익이 발생한다.

>> [표 10] 기본세율 구간별 한국의 관세 경쟁력 비교

구분	기본세율 12.5% 미만	기본세율 12.5% 이상
한국의 총관세율	12.5% 고정	12.5% (FTA 적용 시)
한·미 FTA 활용 효과	X	O
vs 10% 상한(EU·대만)	불리(최대 2.5%p)	유리
vs 10% 정액 가산 (인도·캐나다 등)	• MFN 2.5% 초과 품목은 유리 • MFN 2.5% 미만 품목은 불리	유리
vs 12.5% 정액 가산 (베트남·중국 등)	유리 (MFN 0%인 품목은 제외)	유리

[표 10]에서 확인되듯이 한국의 관세 경쟁력은 MFN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업의 대응 전략도 품목별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 MFN이 12.5% 이상인 섬유·의류와 일부 농림수산물들은 한·미 FTA 활용이 직접적인 관세 절감으로 이어지는 만큼, 원산지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MFN이 12.5% 미만인 품목은 FTA 활용만으로는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없으므로, 301조 관세 면제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종량세·복합세 물품의 12.5% 상한 적용 방법

적용 대상	종량세(Specific Duty) 또는 복합세(Compound Duty)가 적용되는 물품
적용 근거	HTSUS 주석 제52항(k)에 따라 증가환산율(AVE)을 산정한 후 12.5% 상한(net of MFN) 적용 여부를 판단
증가환산율(AVE)	$AVE = MFN에\ 따른\ 관세액 \div 과세가격 \times 100$
적용 원칙	• AVE가 12.5% 미만 → 12.5%가 되도록 차액만큼 301조 추가관세 부과 • AVE가 12.5% 이상 → 추가관세 없음
예시	• 1kg당 50센트의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을 과세가격 10달러로 신고한 경우 AVE는 5% • AVE가 12.5% 미만이므로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7.5%의 301조 추가 관세가 부과

※ AVE(Ad Valorem Equivalent)는 종량세 등을 종가세율로 환산한 값을 의미한다.

4. 면제 규정과 점검 사항



(1) 면제 범위 및 중복 적용배제

한국산 물품에 대한 301조 관세의 면제는 공통 면제 품목(부속서 II 파트 A)과 신설 면제 세번(부속서 I)으로 구분된다. 부속서 II 파트 A에 해당 HTSUS 세번이 포함되어 있거나, 민간항공기·부품, 의약품 용도 물품 등 부속서 I의 신설 면제 세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1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301조 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으며, 232조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 [표 11] 301조 관세 면제·배제 유형

구분	근거	주요 대상
공통 면제 품목	부속서 II 파트 A	미국 내 공급 부족 우려 원자재, 경제 교란 우려 제품, 국내 조달이 어려운 제품 등
신설 면제 세번	부속서 I (9903.05.85~92)	경과조치 화물, 민간항공기·엔진·부품, 의약품 용도 물품, 인도적 기증품, 정보자료
제232조 적용품목 (중복 부과 배제)	주석 제52항 (f)호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 승용차·경트럭·부품, 중대형 차량·버스, 목재, 반도체, 특허 의약품
기타 관세 특례	HTSUS 제98류 등	여행자 휴대품, 해외 수리·가공 및 조립 물품(부가가치분 과세), FTZ 반입 물품

※ 세부 대상 품목 및 적용 요건은 [부록 2]를 참조.

(2) 신고 단계별 점검 사항

수출기업은 대미 수출 물품의 통관 과정에서 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순서에 따라 301조 관세 적용 여부와 최종 관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① HTSUS 세번 확정 및 232조 적용 여부 확인

우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미국 관세율표(HTSUS)³⁾를 통해 해당 물품의 HTSUS 세번을 확인한다. 이후 주석 제52항 (f)호에 따라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반도체 등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232조 대상 품목은 301조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② 면제 대상 여부 확인

부속서 II 파트 A의 공통 면제 품목 해당 여부와 부속서 I의 신설 면제 세번(민간항공기·부품, 의약품 용도 물품 등)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HTSUS 제98류에 따른 특례 통관 대상인지도 함께 검토한다.

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운영하는 미국 관세율표(HTS) 온라인 검색 시스템(hts.usitc.gov)을 통해 세번별 세율과 제99류 특별조치 세번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적용세율(Column 1) 및 제99류 세번 결정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 여부를 확인한 후 Column 1의 적용세율(General 또는 Special)을 기준으로 제99류 세번을 결정한다. 적용세율이 12.5% 미만이면 HTSUS 9903.05.71을 적용하여 총관세율이 12.5%가 되도록 신고하고, 12.5% 이상이면 HTSUS 9903.05.70을 적용하여 기본세율을 그대로 적용한다.

④ AD·CVD 적용 여부 최종 확인

마지막으로 301조 관세와 별도로 해당 물품이 반덤핑관세(AD) 또는 상계관세(CVD)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여 최종 관세율을 결정한다.

5. 마무리하며



이번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관세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교역 상대국의 강제노동 관련 제도와 집행 수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국가 단위의 통상조치라는 점에서 기존 품목별 관세와 구별된다. 원칙적으로 면제 대상이 아닌 한국산 물품 전반에 적용되지만, 한국에는 12.5% 상한(net of MFN) 방식이 적용되어 품목의 MFN 수준에 따라 실제 관세 부담이 달라진다.

분석 결과, MFN이 12.5% 이상인 섬유·의류·농림수산물 등은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총관세율을 12.5%로 제한할 수 있어, FTA 미체결국이나 정액 가산 방식이 적용되는 주요 경쟁국에 비해 관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MFN이 12.5% 미만인 품목은 한-미 FTA를 활용하더라도 총관세율이 12.5%로 유지되어 협정관세 활용의 실익이 제한되며, 일부 품목은 10% 상한 방식이 적용되는 EU·대만보다 높은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품목은 301조 강제노동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속서에 따른 면제 품목과 특례 규정도 별도로 운영된다. 따라서 기업은 품목별 적용 세율뿐 아니라 232조 적용 여부, 면제 대상 여부, 한-미 FTA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관세율을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무역대표부는 무역법 307조에 따라 이번 조치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경제권에 대해서는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한 추가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은 관련 제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품목별 세율 산정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원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본 고는 2026년 7월 24일 자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및 무역대표부(USTR) 공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미국 정부의 추가 조치 또는 관보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록 1] MFN 12.5% 이상 세율 - 2025년 對한 수입실적 상위 30대 품목

- 2025년 미국의 대(對)한국 수입실적이 있는 품목 가운데 기본세율(MFN)이 12.5% 이상인 상위 30대 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모두 한·미 FTA 협정세율(0%) 적용 대상이다.
- 한·미 FTA를 적용하면 총관세율은 12.5%로 제한되므로, 미국과 FTA가 없는 EU·대만(기본세율 적용) 및 10%·12.5% 정액 적용 경제권보다 낮은 관세 부담을 갖는다.
- 다만 USMCA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캐나다산·멕시코산 물품은 제301조 관세 적용이 배제(HTSUS 9903.05.93, 9903.05.94)되므로 본 비교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표] 2025년 미국의 對한 수입실적 기준 MFN 12.5% 이상 품목 상위 30개

(한·미 FTA 적용 효과)

순위	산업군 (MTI 1단위)	HTS	기본세율 (General)	한국 (301조 관세 12.5% 상한)		수입실적 (천달러)
				협정세율 X	협정세율 O	
1	농림수산물	1904900140	14.0%	14.0%	12.5%	63,104
2	섬유류	6105202010	32.0%	32.0%	12.5%	47,008
3	농림수산물	2008979094	14.9%	14.9%	12.5%	19,059
4	섬유류	6110303053	32.0%	32.0%	12.5%	13,494
5	섬유류	6115969020	14.6%	14.6%	12.5%	12,369
6	농림수산물	2202992800	23.5¢/liter + 14.9%	23.5¢/liter + 14.9%	12.5%	11,355
7	섬유류	6001920020	17.2%	17.2%	12.5%	8,191
8	섬유류	6116105520	13.2%	13.2%	12.5%	5,507
9	섬유류	6001920040	17.2%	17.2%	12.5%	2,786
10	섬유류	5407531000	18.8¢/kg + 17.4%	18.8¢/kg + 17.4%	12.5%	2,708
11	섬유류	6110303059	32.0%	32.0%	12.5%	2,346
12	섬유류	5408229030	14.9%	14.9%	12.5%	2,226
13	섬유류	6217109530	14.6%	14.6%	12.5%	2,123
14	섬유류	5407619930	14.9%	14.9%	12.5%	2,108
15	생활용품	4202929700	17.6%	17.6%	12.5%	2,107
16	섬유류	6104632006	28.2%	28.2%	12.5%	1,703
17	섬유류	6109100070	16.5%	16.5%	12.5%	1,174
18	생활용품	6404119080	20.0%	20.0%	12.5%	1,110
19	섬유류	6109100012	16.5%	16.5%	12.5%	952
20	섬유류	6110110080	16.0%	16.0%	12.5%	948
21	섬유류	5407692060	14.9%	14.9%	12.5%	912
22	섬유류	6110202079	16.5%	16.5%	12.5%	904
23	섬유류	5512910090	14.9%	14.9%	12.5%	832
24	섬유류	6211431062	16.0%	16.0%	12.5%	823
25	섬유류	6116105510	13.2%	13.2%	12.5%	779
26	섬유류	6211339054	16.0%	16.0%	12.5%	727
27	섬유류	6205202067	19.7%	19.7%	12.5%	714
28	생활용품	7013492090	22.5%	22.5%	12.5%	695
29	섬유류	5407619970	14.9%	14.9%	12.5%	669
30	섬유류	6206303045	15.4%	15.4%	12.5%	666

※ 종량세 또는 복합세 적용 품목의 FTA 적용 관세율은 미국 주석 제52항 (k)에 따른 종가환산율(AVE)을 기준으로 12.5% 상한을 적용한 결과를 표시하였다.

[부록 2] 301조 관세 면제 대상 및 적용 기준

· 부속서 II 파트 A (전 경제권 공통 면제 요건) ·

부속서 II 파트 A는 대통령 각서에서 정한 면제 기준에 따라 선정된 HTSUS 세번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국가별 추가 면제 목록이 없으므로 파트 A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면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 관세 부과 시 미국 내 공급 부족이 초래될 수 있는 원자재
- 관세 부과 시 미국 경제 전반에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
- 미국 내 충분한 물량 또는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조달되기 어려운 제품
- 관세 부과 시 조사 대상 관행 제거에 실효적이지 않은 제품

· 부속서 I 신설 면제 세번(HTSUS 제99류) ·

- 9903.05.85: 경과조치 대상 화물
- 9903.05.86 / 87: 주식 제52항 (b)호 및 (c)호 열거 품목
- 9903.05.88: 민간항공기 및 그 엔진·부품·구성품, 지상 비행 시뮬레이터 및 부품
- 9903.05.89: 의약품 용도 물품
- 9903.05.90: 제232조 관세 적용 품목
- 9903.05.91: 인도적 목적 기증품(식품·의류·의약품 등)
- 9903.05.92: 정보자료(출판물, 영화, 음반, CD-ROM, 예술품 등)

· 제232조 우선 적용 품목(301조 중복 부과 배제) ·

해당 품목은 제301조 관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우선 적용된다.

- 알루미늄·철강·구리 제품 및 파생 제품 (9903.82.02, 9903.82.04~9903.82.26)
- 승용차(세단, SUV, 미니밴 등) 및 경트럭, 관련 부품
- 중·대형 차량, 버스 및 관련 부품
- 목재 제품 (9903.76.01 등)
- 반도체 물품 (9903.79.01)
- 특허 의약품 (9903.04.60~9903.04.66, 2026년 7월 31일 발효)

· 기타 면제 및 통관 특례 ·

- 여행자 휴대품: 미국 입국자 동반 수하물 내 개인용 물품 비적용
- HTSUS 제98류: 적법 신고 시 면제. 단 해외 수리·가공(9802.00.40/50/60) 및 해외 조립(9802.00.80)은 해당 부가가치에 추가관세 부과
- 자유무역지대(FTZ): 국내지위 외에는 '특혜외국지위'로만 반입 가능하며 반입 시점 상태로 관세 확정
- 반덤핑·상계관세(AD/CVD): 제301조 관세와 별도로 병과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있는 경우 지속 적용